

'95년 식품 등 기준 및 규격개정 (식품공전 개정사항 해설)

가. 개정취지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공고 제 1995-38호('95년 6월 1일)로 입안예고되었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이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47호('95년 9월 29일)로 확정되었음.

□ 개정취지

식품관련 국내·외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식품개발촉진을 위함

나. 주요내용

현 행 : 23개 식품군의 152개 품목군
확정고시 : 20개 식품군의 171개 식품종

□ 자가기준·규격제품의 공정규격화

◇ 자가기준·규격으로 운영되어 오던 식품을 공통기준·규격 및 개별기준·규격을 개정하여 흡수토록 함

- 자가규격 발급 총 건수 : 10,800여건
- 금번 개정안 흡수가능건수 : 7,200여건
- 기공전화 건수 : 3,600여건

('94.7.22일자로 흡수)

○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흡수

▷ 「제 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외의 가공식품」(이하 “일반가공식품”이라 함) 신설

-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과실류 및 채소류가공품, 코코아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10개 식품종 신설)

○ 개별기준 및 규격으로 흡수

▷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기타식품 등에 자가기준·규격 대상식품을 공정규격화

- 식용유지 : 기타 식용유지 신설
- 특수영양식품 : 영양보충용식품, 특정용도식품 신설
- 건강보조식품 : 배아식품, 단백분해식품, 뮤코다당·단백식품, 베타 카로틴식품, 키토산가공식품, 프로폴리스식품 신설
- 조미식품 : 혼합장, 향미유 신설
- 인삼제품류 : 인삼레토르트식품, 기타 인삼제품 신설
- 기타 식품류 :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팥콘용 옥수수가공품 신설

□ 유통기한의 자율화

◇ 권장유통기한을 유통기간으로 변경하고, 유통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

◇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대부분 품목의 유통기간을 자율화할 계획이나, 시유, 두부, 생면·숙면, 특수영양식품, 튀김식품, 도시락 등은 98년 이후 예정

권장유통기한을 유통기간으로 변경하고, 유통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대부분 품목의 유통기간을 자율화할 계획이나 시유, 두부, 생면·숙면, 특수영양식품, 튀김식품, 도시락 등은 98년 이후 예정

- 장기간 실은유통제품의 유통기한 자율화
- ▷ 상온에서 보존유통시 부패·변질의 우려가 극히 적은 식품
- ▷ 위생상의 안전성이 높고 위해도가 낮은 식품
- ▷ 제품특성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의의가 없는 식품 등
- ▷ 유통기한 자율화율 : 60%
- 2백7개 품목(총 품목수 346)
- 참고 : 별첨 1(식품품목별 유통기한 자율화 계획)

- 금번 자율화 제외 대상
- ▷ 냉장, 냉동제품 및 부패변질이 용이한 제품

○ 자율화에 따라 복지부에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요령 및 유통기간 연장설정지침”(보건복지부, '95.9.26, 별첨 2 참조)의 작성·시달

- ▷ 유통기한 설정요령 지침의 목적
유통기한 자율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유통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관리토록 지도
- ▷ 유통기간 연장설정 지침의 목적
유통기한 연장을 원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이 지침에 따라 유통기간 연장설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공통 기준 및 규격의 보강

◇ 개별기준·규격 설정식품과 미설정식품의 관리 및 자가기준·규격제품의 수용을 위하여 공통기준 및 규격을 대폭 확대하거나 보완

○ “기준 및 규격의 적용” 구체화 및 선별적용의 인정

- ▷ “제 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은 모든 식품에 적용
- ▷ 개별기준·규격 설정 식품
 - 개별기준·규격 우선적용후 공통기준·규격 동시 적용
 - 단, 공통기준·규격의 선별적용
- ▷ 개별기준·규격 미설정 식품
 - 공통기준·규격 적용
 - 단, 유해물질 등의 기준 선별적용
- ▷ 통·병조립식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일반가공식품
 - 해당 성분규격 우선적용후 “1) 식품일반의 규격” 선별적용
- ▷ 통·병조립식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의 제조·가공처리한 모든 제품
 - 해당 개별 기준·규격과 함께 해당 제조·가공 관련 기준·규격 동시 적용
 - 단, 항목중복시는 강화된 항목 적용

○ 「제 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이외의 가공식품」의 성분규격 신설

- ▷ 이물, 타르색소,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군, 세균

○ 통·병조립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의 기준·규격을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이동

○ 식중독균(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크로스트리디움균, 리스테리아균 등)의 불검출 신설

□ 표시기준의 일원화

◇ 식품업계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사후관리 체제를 대비코자 함

○ 현황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별표 2(법 10조 근거)
- ▷ 식품공전 공통표시기준
- ▷ 식품공전 개별표시기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표시기준과 식품 등의 기준·규격상의 표시 기준 일원화를 위하여 식품공전상의 표시기준을 삭제

○ 별도 고시로 일원화('95.9 현재 식품 등의 표시기준(안) 입안예고중)

□ 기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도자기제, 법랑도포, 유리제, 용기류 등의 기준·규격을 국제규격과 조화되도록 보완·개정

○ 제 7. 일반시험법과 개별시험법을 보완·개정

- ▷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등의 시험법을 제7. 일반시험법으로 이전
- ▷ 성상(관능)시험법 신설
- ▷ 미량성분시험법 등 보완·개정

※ 부칙(별첨 3 참조)

○ 제1조(시행일)

- ▷ '95.10.1 시행 단,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
- ▷ 기인정 자가기준·규격의 폐지

○ 제2조(기준 및 규격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 ▷ 강화된 기준·규격은 '96.6.30까지 유효

○ 제3조(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 ▷ 기 허가(신고)된 식품의 표시기준은 '97.12.31까지 유효

○ 제4조(영업 및 품목제조허가(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 ▷ '96.6.30까지 변경허가(신고)

○ 제5조(유통기한 적용에 대한 적용 예)

- ▷ 기 제조·가공·수입 또는 유통중인 식품은 종전 유통기한 적용

다. 목차상 주요 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풀이 16) 조미식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풀이 <삭제> 16) 통·병조림 식품 17) 레토르트 식품 18) 냉동식품 19)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외의 가공식품 ① 곡류가공품 ② 두류가공품	

현행	개정안	비고
	③ 감자류가공품 ④ 전분가공품 ⑤ 식용유지가공품 ⑥ 당류가공품 ⑦ 과실류 및 채소류가공품 ⑧ 코코아가공품 ⑨ 수산물가공품 ⑩ 기타 가공품	
<p>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p> <p>4. 유가공품 <신설></p> <p>6. 어육연제품</p> <p>7. 통조림 또는 병조림 7-1. 통·병조림 식품</p> <p>8. 두부류</p> <p>9. 식용유지 <신설></p> <p>10. 면류</p> <p>11. 다류</p> <p>12. 청량음료</p> <p>13. 특수영양식품 <신설> <신설></p> <p>14. 건강보조식품 14-9 달맞이꽃종자유식품 14-10 배아유가공식품 14-10-1 소맥배아유 <신설></p> <p>14-16 단백질식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p> <p>15. 조미식품</p>	<p>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p> <p>4-16 유단백기수분해식품</p> <p>6. 어육제품 <삭제></p> <p>7. 두부류</p> <p>8. 식용유지 8-23 기타식용유지</p> <p>9. 면류</p> <p>10. 다류</p> <p>11. 청량음료</p> <p>12. 특수영양식품 12-4 영양보충용 식품 12-5 특정용도식품</p> <p>13. 건강보조식품 13-9 감마 리놀렌산 식품 13-10 배아가공식품 13-10-1 배아유식품 13-10-2 배아식품</p> <p>13-16 단백질식품류 13-16-1 단백질식품 13-16-2 단백질분해식품 13-16-3 류코다당·단백식품</p> <p>13-24 베타 카로틴식품 13-25 키토산가공식품 13-26 프로폴리스식품</p> <p>14. 조미식품</p>	<p>◦ 공통규격으로 옮김</p> <p>◦ 「7. 통조림 또는 병조림」이 공통규격으로 옮김에 따라서 번호조정</p> <p>◦ 범위확대</p> <p>◦ 범위확대</p> <p>◦ 범위확대 및 구분</p>

현행	개정안	비고
<p><신설> <u>15-11 천연향신료</u> <신설></p> <p>16. 얼음</p> <p>17. 인삼제품류 <u>17-2 인삼분말</u> <u>17-3-3 인삼정차류</u> <u>17-5 인삼통·병조림</u></p> <p><신설> <신설></p> <p>18 김치·절임식품</p> <p>19 주류</p> <p>20 인스탄트식품류 <u>20-1 레토르트 식품</u> <u>20-2 즉석건조식품</u></p> <p>21. 건포류</p> <p>22. 기타제조·가공식품류 <u>22-1 메주</u> <u>22-2 코코아 분말</u> <u>22-3 코코아 버터</u> <u>22-4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u> <u>22-5 캡셀류</u></p> <p>23. 기타식품 <u>23-1 전분</u> <u>23-2 단순과실·채소가공품</u> <u>23-3 조미김</u> <u>23-4 냉동식품</u> <u>23-5 튀김식품</u> <u>23-6 벌꿀</u> <u>23-7 도시락</u> <u>23-8 식용원료우지 및 돈지</u> <신설> <신설> <신설> <신설></p>	<p>14-6 혼합장 <u>14-12 향신료가공품</u> <u>14-15 향미유</u></p> <p>15. 얼음</p> <p>16. 인삼제품류 <u>16-2 인삼분말류</u> <u>16-3-3 인삼엑상차류</u> <u>16-5 인삼통·병조림류</u> <u>16-5-1 인삼통·병조림</u> <u>16-5-2 인삼레토르트식품</u> <u>16-9 기타 인삼식품</u></p> <p>17 김치·절임식품</p> <p>18. 주류</p> <p><삭제> <삭제> <이동></p> <p>19. 건포류 <u>20. 기타식품류</u> <u>20-1 즉석건조식품</u> <삭제> <u>20-2 메주</u> <u>20-3 코코아 분말</u> <u>20-4 코코아 버터</u> <u>20-5 땅콩 및 견과류가공품</u> <u>20-6 캡셀류</u></p> <p>20-7 전분 <u>20-8 과·채가공품류</u> <u>20-9 조미김</u> <삭제> <u>20-10 튀김식품</u> <u>20-11 벌꿀</u> <u>20-12 도시락류</u> <u>20-13 식용원료우지 및 돈지</u> <u>20-14 모조치즈</u> <u>20-15 식물성크림</u> <u>20-16 추출가공식품</u> <u>20-17 팝콘용 옥수수가공품</u></p>	<p>◦ 범위확대 ◦ 범위확대 ◦ 인삼레토르트류 신설에 따라 현행 을 16-5-1로 번호지정</p> <p>◦ 20. 인스탄트식품류 삭제 ◦ 공통규격으로 옮김. ◦ 20-1로 재배치함</p> <p>◦ 번호조정 ◦ 22. 기타제조·가공식품류를 20. 기타 식품류로 통합하고 번호조정</p> <p>◦ 범위축소 ◦ 공통규격으로 옮김</p>